

1. 폐지이유

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을 시·도 조례로 정하도록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(대통령령 제20996호, 2008. 9. 10., 일부개정)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「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」을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
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폐지령안

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
관한 규칙을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